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60
----------	-------

발의연월일 : 2026. 3. 13.

발 의 자 : 위성곤·이건태·이학영
복기왕·박정현·박군택
박희승·서영교·윤준병
송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전 지구적인 기후 목표와 연계된 배출 허용량에 대한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주기적

으로 산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8호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말한다.

제8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8조의2에 따라 산출된 국가 탄소예산
10. 제19조의3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권고사항
1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2.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탄소예산 산출) ①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

며,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과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7.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 --.</p> <p>1. ~ 17. (현행과 같음)</p> <p><u>18.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특정한 온도 목표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연도 이후에 허용되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말한다.</u></p>
<p>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생 략)</p> <p>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 8. (생 략)</p> <p><u>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u></p> <p><u><신 설></u></p>	<p>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u>9. 제8조의2에 따라 산출된 국가 탄소예산</u></p> <p><u>10. 제19조의3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u>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권</p>

<신 설>

<신 설>

⑥·⑦ (생 략)

<신 설>

고사항

1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

12. 협정 등에서 정한 국제적 행동의 기준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탄소예산의 산출) ①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2년마다 산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탄소예산의 추정치
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3. 현 중장기감축목표등의 국가 탄소예산 부합 여부 평가
4. 국가 탄소예산에 부합하는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대한 권고안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 (생략)

<신설>

⑤ ~ ⑨ (생략)

<신설>

5.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탄소예산의 산출 방법, 결과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기후과학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과학적 역량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둔다.

② 기후과학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기후과학위원회의 행정, 분석·예측,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과학센터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기후과학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 등) ① 기후과학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예측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신 설>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진전 동향 등에 관한 사
항

3. 제8조의2에 따른 국가 탄소
예산의 산출과 진전 동향 등
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
기 적응대책과 진전 동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기후과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과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분석·예측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하여 정책 등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를 통보받은 경우 조치계획 등을 기후과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은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과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및 대국민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